

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3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1. 6. 15
- 다. 상정일자 : 2001. 6. 15

(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김재월

나. 제정사유

-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기금을 활용 직·간접 영향권의 주민에게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(안 제1조)
-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(안 제2조)
 - 주변영향지역, 주민지원협의체, 지원기금, 지원사업
-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(안 제3조)
 -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
 -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 소각시설
-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(안 제4조)
 -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함.

-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- 지원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
 -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
 - 지원사업 계획수립
 -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
 - 지원대상 사업결정
 -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
- 이주대책 수립대상(안 제6조)
 - 매립시설 3만제곱미터 이상 10년 이상 사용시설
-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(안 제7조)
 - 매립시설 3만제곱미터 이상 10년 이상 사용시설
-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군의 출연금
 -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
 -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
- 기금의 용도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-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
 - 영 제27조 제1항의 별표3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
 -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현금지원은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 지원
 - 간접영향권은 주민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
 -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
 -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 할 수 없음.
- 기금의 운영공무원(안 제10조)
 - 운용관 환경과장, 기금출납원 환경정화담당

-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)
 - 주민건강진단비
 -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
 - 지하수 수질검사
 -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
 - 주민지원기금 범위내에서 지원
-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(안 제13조)
 - 공개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
 - 1일 처리대상 30톤이상 소각시설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동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같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 설치시, 입지선정 및 주변 영향지역 결정고시 등 입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대부분의 내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부합된 사항이나
- 동 조례 제3조,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으로 그 규모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,
- 우리군의 경우,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설입지 대상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동 시설의 설치 절차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상황을 예단케 함으로서, 시설유치에 대한 합의도출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,
- 동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견을 거치는 등 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
지원에관한조례안

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주변영향지역”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말한다.
- ② “주민지원협의체”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.(이하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
- ③ “지원기금”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.
- ④ “지원사업”이라 함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.

제3조(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)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.

1.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
2.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

제4조(주변영향지역 결정 · 고시)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·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· 고시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·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

제5조(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) ①지원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

②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.

1.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
2.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
3.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
4.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결정
5.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

제6조(이주대책의 수립대상)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대상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 주를 희망한 경우와,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.

제7조(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) 영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을 말한다.

제8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군의 출연금
2.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
3.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
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
2.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관련별 표3의 지원

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.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되도록 하며,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.

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.

④ 기급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0조(기금의 운영공무원)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,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정화담당으로 한다.

제11조(기금관리장부의 비치)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,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주변영향지역 지원)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주민건강진단비
 -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
 - 지하수 수질검사

④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
②사업비의 지원은 지원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제13조(환경상 영향의 조사·공개)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·공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한다.

제14조(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위탁)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제2항 및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록

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.